

통합중앙회 무엇이 달라지나(Ⅱ)

김 종 훈

농림부 협동조합과 서기관

1. 신용사업 중심에서 유통·경제사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 선조합은 신용사업 중심에서 유통·경제사업 중심의 조합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익금은 출자한 조합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중앙회 사업 중 회원조합과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50/100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지난 6월 8일 농협중앙회설립위원회는 중앙회 경제사업장 104개소 중 58개소 사업장을 이관 또는 자회사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중앙회에 권고한 바 있다.

중앙회 통합으로 절감되는 재원과 재정자금으로 조합별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등의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는 등 농산물의 제값받기가 가능해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와함께 일선조합이 지역 농·축산업 정보센터로서 산지생산·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정부는 금년도 신규예산 2,000억원을 확보하여 일선조합의 유통지원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일선조합이 유통·경제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매년 2,000~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전국 3,000여개의 농·축·인삼협 판매장을 통합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유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농·축산물의 원스톱 쇼핑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되어 농협 판매장을 많이 애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와 직결된다.

중앙회 통합과 경영혁신, 그리고 일선조합의 유통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원에게 농약·비료·사료 등을 현재보다 싸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 조합경영이 건실화

되어 상호금융 대출금리도 한 자리수로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합실정에 맞게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두어 전문기술교육, 경영컨설팅, 출하시기조절, 품질관리 등의 지도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에 대한 수준 높은 영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조합운영 상황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한층 높아진다.

조합경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였다. 즉, 조합이 자율적으로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은 평가 및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에 적극 반영하게 하였다.

또한 조합은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의외 추가로 이사회이사록을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도 공개해야 한다.

조합별로 감사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

여 자율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던 것을 총회의결사항으로 하여 임원의 경영능력과 조합경영 수지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 300인 또는 5/100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조합원 300인 또는 5/100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와 서류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권도 새로이 인정하였으며,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감사인 선임청구권을 보장하여 조합원이 조합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조합원 20/100이상의 동의에서 500인 또는 10/100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조합원의 조합운영에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동일가구당 2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가입제한을 폐지하여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되어 조합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준조합원 자격만 부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다만 동일인이 같은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에 2개이상 가입할 수 없는 규정은 현재와 같이 존치하였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조합경영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경영과 조합의 사업이용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조합원 책임』 규정과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

※ 새로워진 통합중앙회의 역할 ※

1. 신용사업 중심에서 유통·경제사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2.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조합운영 상황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한층 높아진다.
3. 조합장 선출 방식이 다양해지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경영책임이 강화된다.
4. 조합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였다.

설하여 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합장 선출 방식이 다양해지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경영책임이 강화된다.

조합마다 조합원 수 등 규모에 차이가 있고 지역 조합·업종조합 등 그 특성이 각각 다르므로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간선제 외에 이사회 호선방식을 추가하여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변경 의결방식을 조합원 투표방법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완화하여 선출방식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상임인 조합장의 입후보자격을 2년이상의 조합원 신분보유기간에서 5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합장 선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과 외부인사 등 7인이상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선거운동 방법으로 공개토론회를 도입하여 후보자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다.

현재의 조합장이 명예직이면서도 실질적인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권한에 비하여 책임도 낮아 조합경영이 부실화되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조합장을 상임, 비상임으로 구분하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집행토록 의무화하고 상임인 조합장이나 이사에게는 고의·중과실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소홀에 따른 경과실 책임도 부여하여 경영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사회 의결에 대한 업무집행시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도모하였다.

4. 조합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였다.

새 협동조합법에서는 품목별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품목별 조합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품목조합들이 실질적인 경제사업 연합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품목별 전문조합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구역과 조합원 자격을 정

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농 축협과 달리 자율적으로 사업관할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 조합 특성에 맞게 조합원 자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실정에 따라 조직전환이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발전이 용이해졌으며, 중앙회의 회원조합장 이사중 1/3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케 하므로써 새로운 중앙회내에서 품목별·업종별 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하였다.

특히, 동일한 품목이나 업종을 취급하는 5개 이

상의 품목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동일 품목조합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경우 전국단위의 연합회 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회원의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제품홍보, 정보교환 등의 사업이외에 물자의 공동구매나 제품의 공동판매 등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품목별연합회의 회원이라도 중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 중앙회의 사업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95년 6월 23일 이후 설립된 품목조합은 경제 유통사업만 실시하고 신용사업 취급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에 전념토록 하였다. (㉠)

(필자연락처 : 02-503-7218)

천연 미네랄 공급 소식

- ❖ 모든 생명체가 천연미네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신비한 성장요소와 안전한 필수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 천연미네랄은 각종 미량미네랄을 필요한 조직에 공급하여 빠른 성장, 튼튼한 골격을 가진 어미소로 성장시켜 송아지를 잘 낳고, 유생산 증가, 유지방 증가와 신선하고 안전한 고급우유를 생산케 한다.
- ❖ 천연미네랄은 반추위내 pH를 조절하는 최고의 완충제로서 각종 효소의 증식과 활성화로 더 완전한 소화와 영양분의 흡수가 가능케 되고 천연면역성과 항병력이 생겨 각종 질병을 이기고 장수하여 낙농가의 재산을 증식시켜 준다.
- ❖ 천연미네랄은 높은 양이온 교환능력을 가진 미세한 규산염콜로이드로 세균성 독성물질이나 화학적인 독성을 제거하는 능력이 크며, 사료에 의한 산독증이나 여름, 겨울철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지하여 온순하고 편안하게 오랜시간 누워서 반추하면서 건강하여 생산성을 높여준다.
- ❖ 천연미네랄은 집약낙농방식에 의한 고능력우와 국제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 영양물질이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공급하여 주면 몇배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 연락주십시오

한국 NAF 미네랄

WESTERN MINERALS CO. CALIFORNIA, U.S.A
TEL : (031)964-6367, H.P : 011-446-8252